

1. 제정이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안 제2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안 제3조, 별표 1)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처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간 및 가중 또는 감경 기준(별표 1) 등을 정함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안 제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

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변경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
(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
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해양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 또는 확보 계획에 관한 서류
4.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 및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 현황
4. 전문인력 확보 현황·계획
5.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보 현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수료증의 발급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7호서식과 같다.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해양교육프로그램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개선·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양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변경)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개선·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6개월 중 짧은 기간을 한도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1호	시정명령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나. 그 밖에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2호	시정명령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제6조제2항 관련)

영역	항목	세부 구성요소
1. 교육프로그램	가. 구성	1) 프로그램의 제목, 목표 및 기대효과가 기술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의 대상, 이론적 배경, 주요 내용, 강의·실습 시간, 장소, 인원, 일정표, 진행 방법·과정, 준비물 및 진행의 유의사항이 기술되어 있을 것 3)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교육 대상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
	나. 시간	1) 교육프로그램은 2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2) 동일 프로그램을 1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을 것
	다. 내용	1)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2) 학습자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내용일 것 3)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출 것 4) 프로그램 내용 간 체계성이 있을 것 5) 프로그램 내용이 독창적이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일 것 6)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라. 평가	1) 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
	마. 운영·관리	1)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의 홍보, 참여 유도 등 참여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교육활동 기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수요원	가. 자격	1) 교수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할 것
3. 교육환경	가. 공간 및 설비	1)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장 등의 공간과 안전한 시설을 확보할 것 2) 교육 프로그램 및 인원 에 맞는 교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나. 안전관리계획	1)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할 것
	다. 위생관리	1) 식사 및 숙박 시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도록 계획할 것 2) 숙박교육의 경우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를 지정할 것

[] 해양교육센터
[] ()지역 해양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위 치				
	기본시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지원시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운영인력	명 (해양교육전문강사 명, 운영전담인력 명, 기타 명)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 명칭 및 운영시간 등을 간략히 적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지역 해양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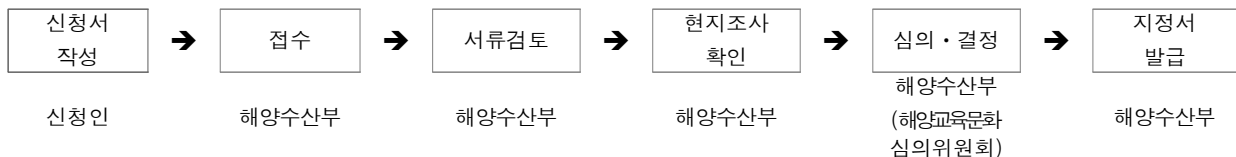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 또는 확보 계획에 관한 서류 4. 시설·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해양교육센터 지정서
()지역 해양교육센터

지정번호	제 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유의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 해양교육센터 지정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 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
[]운영정지

명령서

제 호						
처분 대상자	지정번호			지정 유형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반사항						
처분기간	시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운영정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분사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처분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 m²]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육분야								
교육 내용	교육과목	교육 시간						
		계	강 의	실 습				
	교육 시설	시 설 구 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강 의 실			m ²					
실 습 장			m ²					
사 무 실			m ²					
교육 장비	교재 · 교구		사무용 기기			소방 · 안전 기구		
	교재	교구	컴퓨터	복사기	팩스	기타	소화기	기타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전공) 및 경력	보유 자격증
해양교육 전문강사 인적사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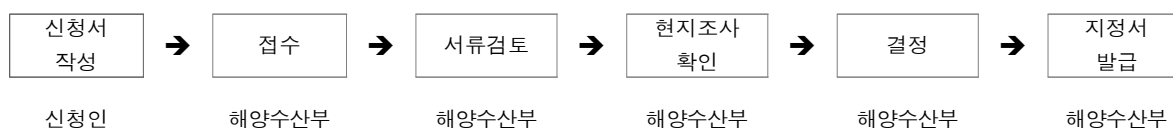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 현황 4. 전문인력 확보 현황·계획 5.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보 현황·계획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유의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나.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 라.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라.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양교육 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기간: . . . ~ . . . (시간)

위 사람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 요	프로그램 명칭			
	교육대상			
	교육시간	계	강의	실습
	교육내용			
	진행방법			
	담당강사			
	평가방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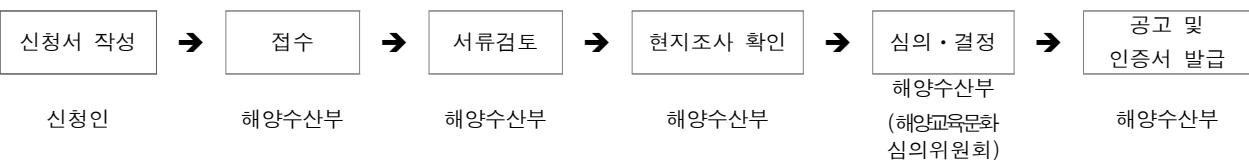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요를 적은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인 증 번 호	제 호		
프 로 그 램 명 칭			
인 증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유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유의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가. 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나.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인증기관		인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프로그램 명칭			
신 청 내 용	변경 사유			
	변경내용	※ 변경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